

현행 부칙	개정안 부칙
이 조례는 <u>도로법 제14조</u> 및 제19조에 의거 <u>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</u> 구도를 인정·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	이 조례는 <u>도로법 제17조의2</u>

도심재개발구역 (변경)지정에 관한 의견청취

의안 번호	170	제안년월일 : 1997. . 제안자 : 마포구청장
----------	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1. 건명 : 도심재개발 마포로3구역 제7지구 변경지정에 관한 의견청취

2. 상정사유

○본 지구는 공공시설에 관한 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으로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마포로3구역 제7지구에 포함되도록 재개발구역을 변경결정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쾌적한 도심환경이 조성되도록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,

○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마포구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3. 주요요지

가. 대상지

- 위치 : 마포구 아현동 600-8번지의외 52필지
- 면적 : 2,949㎡

나. 도시계획사항

재개발구역/준주거지역/미관지구/방화지구/주차장정비지구

다. 토지 및 건축물의 현황

1) 토지

- 지목별 : 2,949.4㎡(53필지)
 - 대지 : 2,639.0㎡(49필지)
 - 도로 : 310.4㎡(4필지)
- 소유별 : 2,949.4㎡(53필지)
 - 사유지 : 2,391.2㎡(49필지)
 - 국·공유지 : 558.2㎡(5필지)

2) 건물 : 11동(957.21㎡)

- 구조별
 - 목조와즙 : 7동(293.76㎡)
 - 목조스래트 : 1동(79.33㎡)
 - 철근콘크리트조 : 3동(584.12㎡)

라. 추진경위

○'79. 9.21 : 재개발구역지정(건고시 제345

호)

○'81.11.13 : 재개발구역계획결정(서고시 제412호)

○'95. 4.25 : 재개발구역계획 변경결정(서고시 제117호)

○'96. 3.29 : 재개발구역계획 변경결정(서고시 제72호)

○'96.11.12 : 재개발조합설립인가

○'97. 1.25 : 재개발구역 변경결정(서고시 제15호)-건축계획변경

4. 입안내용

가. 사업의 명칭 : 마포로3구역 제7지구 도심재개발사업

나. 시행구역 : 마포구 아현동 606-8번지의외 52필지

다. 시행면적 : 시행면적 : 2,949.40㎡
-대지 : 2,142.80㎡
-공공용지 : 806.60㎡

라. 공공시설의 위치 및 규모 : 아현동 600-2번지의외 19필지(806.6㎡)

마. 건축규모

- 대지면적 : 2,142.8㎡
- 건축면적 : 1,128.04㎡(건폐율 : 50.62% ~ 55.67%)
- 연면적 : 23,017㎡~25,317㎡(용적률 : 676.56% ~ 744.20%)
- 층수 : 지상 27층, 지하 7층
- 용도 : 공동주택(업무 및 판매시설)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바. 변경내용

구 분	당 초	변 경
재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	마포구 아현동 606-8번지 외 48필지 2,142.8㎡	마포구 아현동 606-8번지 외 52필지 2,949.40㎡
공공시설의 위치 및 면적	-	마포구 아현동 606-11번지 외 19필지 806.6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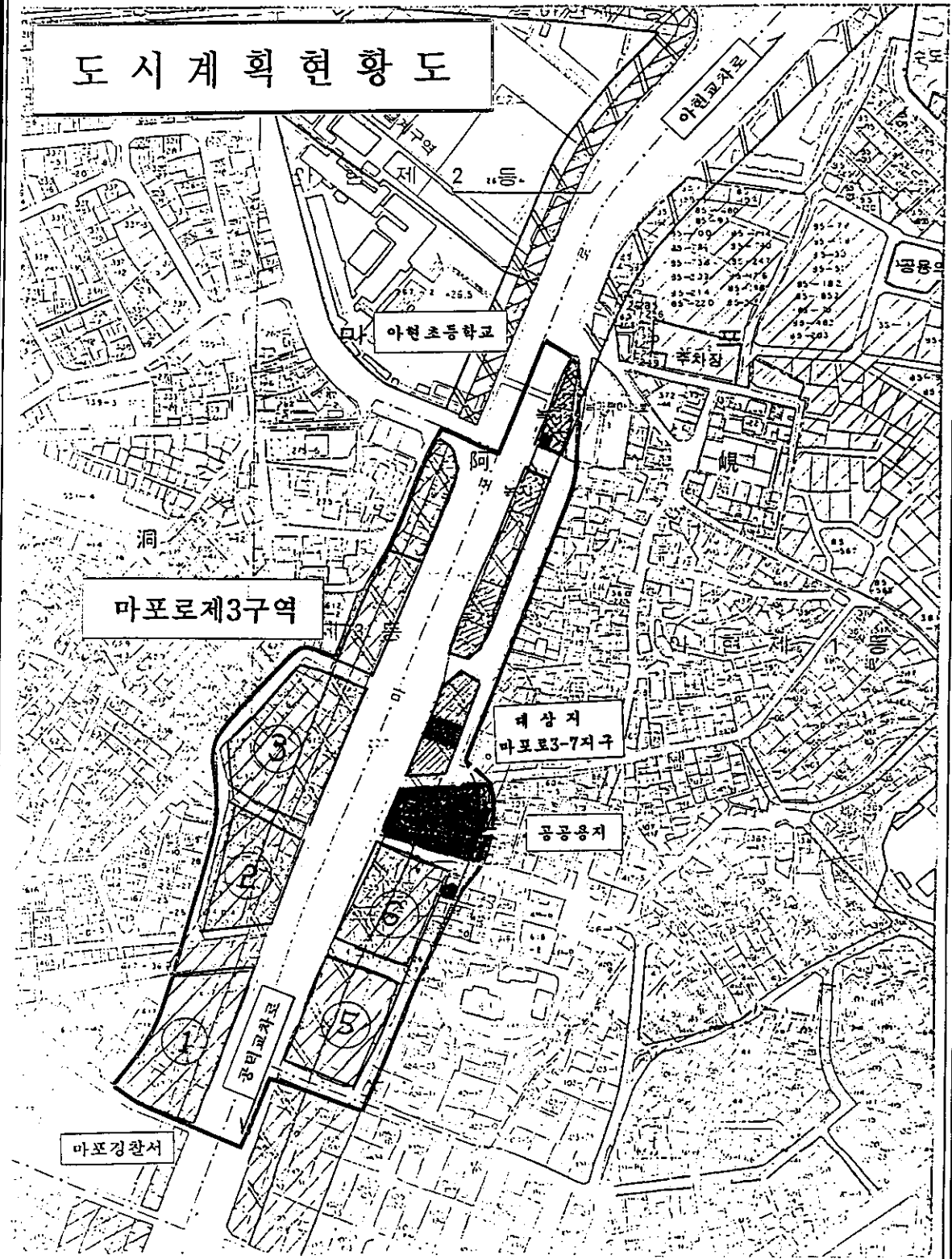
5. 기타

○공고 및 공람

- 건명 : 도심재개발 마포로3구역 제7지구 변경지정을 위한 공람공고
- 일시 : 1997. 1. 13 ~ 1997. 1. 25 (14일간)
- 게재신문 : 문화일보, 내외경제신문('97. 1. 11)
- 공람장소 : 마포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
- 의견접수 : 없음.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도시계획현황도



도심재개발마포로3구역제7지구변경지정에관한
의견청취의견 심사보고서

'97. 2. 22
도시건설위원회

1. 심사결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7.1.31 마포구청장
나. 회부일자 : '97. 2. 4.

다. 상정일자 : 제44회 임시회 제4차위원회('97. 2. 22)상정, 심사, 동의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황정부 도시
정비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본 지구는 공공시설에 관한 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으로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마포로3구역 제7지구에 포함되도록 재개발구역을 변경결정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쾌적한 도심환경이 조성되도록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,
- 도시재개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마포구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나. 주요요지

- 대상지
 - 위치 : 마포구 아현동 600-8외 52필지
 - 면적 : 2,949.4㎡
- 도시계획사항
재개발구역/준주거지역/미관지구/방화지구/주차정비지구
- 토지 및 건축물의 현황
 - 1) 토지
 - 지목별 : 2,949.4㎡(53필지)
 - 대지 : 2,639.0㎡(49필지)
 - 도로 : 310.4㎡(4필지)
 - 소유별 : 2,949.4㎡(53필지)
 - 사유지 : 2,391.2㎡(48필지)

- 국·공유지 : 588.2㎡(5필지)
- 1) 건물 : 11동(957.21㎡)
 - 구조별
 - 목조와즙 : 7동(293.76㎡)
 - 목조스레트 : 1동(79.33㎡)
 - 철근콘크리트 : 3동(584.12㎡)

○추진경위

- '79. 9.21:재개발구역지정(건고시 제345호)
- '81.11.13:재개발구역계획결정(서고시 제412호)
- '95. 4.25:재개발구역계획 변경결정(서고시 제117호)
- '96. 3.29:재개발구역계획 변경결정(서고시 제72호)
- '96.11.12:재개발조합설립인가
- '97. 1.25:재개발구역 변경결정(서고시 제15호)-건축계획변경

다.. 입안내용

- 사업의 명칭 : 마포로3구역 제7지구 도심재개발사업
- 시행구역 : 마포구 아현동 606-8번지의 52필지
- 시행면적 : 시행면적 : 2,949.40㎡
 - 대지 : 2,142.80㎡
 - 공공용지 : 806.60㎡
- 공공시설의 위치 및 규모 : 아현동 600-2번지의 19필지(806.6㎡)
- 건축규모
 - 대지면적 : 2,142.8㎡
 - 건축면적 : 1,128.04㎡(건폐율 : 50.62% ~ 55.67%)
 - 연면적 : 23,017㎡ ~ 25,317㎡(용적률 : 676.56% ~ 744.20%)
 - 층수 : 지상 27층, 지하 7층
 - 용도 : 공동주택(업무 및 판매시설)

바. 변경내용

구 분	당 초	변 경
재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	마포구 아현동 606-8번지 외 48필지 2,142.8㎡	마포구 아현동 606-8번지 외 52필지 2,949.40㎡
공공시설의 위치 및 면적	-	마포구 아현동 606-11번지 외 19필지 806.6㎡

라. 기타

○공고 및 공람

-건명:도심재개발 마포로3구역 제7지구 변경지정을 위한 공람공고

-일시:1997. 1. 13~1997. 1. 25(14일간)

-게재신문:문화일보, 내외경제신문('97. 1. 11)

-공람장소:마포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

-의견접수:없음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김건재 전문위원)

○동 건물 건설부고시 제345호(79. 9. 21)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, 서울시고시 제412호(81. 11. 13) 및 서울시고시 제15호(97. 1. 25)로 사업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된 도심재개발 마포로 3구역 제7지구에 대하여 재개발사업계획중 공공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포함하여 재개발구역울 변경지정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음.

○그 주요 내용을 보면, 재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을 마포구 아현동 606-8의 52필지 2,949.40㎡로 변경하고, 공공시설의 위치 및 면적을 아현동 600-2의 19필지 806.6㎡로 하고자 하는 것임. 동 구역은 서울시 제18차 건축심의(96. 5.15)의결에 따라 지하층 주차장의 주차방식이 재검토되어 그에 따른 지하층수 및 일부건축계획을 변경하여 서울시 제26차 건축심의(96. 7. 10)에 통과된 내용으로 서울시고시 제15호(97. 1. 25)로 도심 재개발구역(건축계획)변경된 바 있으며, 도시재개발 제4조제2항 및 도시계획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공고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마친 바 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질의요지(유용봉 위원): 당초 아현동 606-8의 48필지인데 4필지(총 52필지)가 늘어난 부분을 도면에서 지적해 주시고, 녹지로 있다면 현재 기본지역 3-7지구에 대하여 묶은 이유에 대하여 설명바람.

○답변요지(황정부 도시정비과장): 공공용시

설(용지)가 포함되어야만 사업시행이 가능함.

5. 토론요지:없음

6. 심사결과: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동의하는 것이 가하다고 의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없음.

8. 기타사항:없음

아현초등학교앞 지하보도내
마포구청 별관 신축공사에 관한
行政事務調査計劃(案)

의안 번호	171	제안년월일:1997. 2. 21. 제안자: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
----------	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~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현초등학교앞 지하보도내 마포구청 별관 신축공사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,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개선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는 등 구 행정의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조사기간은 60일간으로 한다(1996. 2. 18 ~4. 17.)

-조사대상기관은 마포구청, 마포구 보건소로 한다.

-조사반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한다.

-조사장소는 마포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실로 한다.

3. 관계법규

-지방자치법 제36조

-지방자치시행령 제16조~제19조

-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

아현초등학교앞 지하보도내
마포구청 별관 신축공사에 관한
行政事務調査計劃(案)

1997年 2月

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會

아현초등학교앞 지하보도내

마포구청 별관 신축공사에 관한
行政事務調査計劃(案)

1. 調査의 目的

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~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현초등학교앞